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
----------	----

제출년월일 : 2003. 11. 1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 포장 규제가 강화되었고,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빈용기 보증금제, 전자 제품의 회수의무화 등이 신설되었으며,
- 위 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시 별도의 이행명령 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분리배출표시가 필요한 제품 또는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4조제4호)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의 무상회수 요구에 판매업자가 불응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4조제6호)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이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4조제7호)

3. 관계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41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조중 “규칙 제5조”를 “규칙 제12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을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40조, 제41조”를 “법 제41조”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 내지 제7호를 신설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 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u>법 제7조 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을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u>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u>----- ----- ----- -----</p>
<p>제6조(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 구청장은 <u>규칙 제5조</u>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 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따로 정한다.</p>	<p>제6조(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 -----<u>규칙 제12조</u>----- ----- -----</p>
<p>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③ (생략)</p>	<p>제13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구청장은 <u>법 제40조 제41조</u>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u>법제15조제5항</u>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p> <p>2. <u>법 제16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p> <p style="text-align: right;">< 신설 ></p>	<p>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u>법 제41조</u>----- ----- -----</p> <p>1. <u>법 제9조 제1항</u>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2. <u>법 제9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3. <u>법 제10조</u>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p>

현행	개정안
< 신설 >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 신설 >	5.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설 >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설 >	7.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